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제정	2013. 11. 1	조례 제1975호	
일부개정	2014. 3. 7	조례 제1996호	
일부개정	2014. 8. 14	조례 제2005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5. 4. 3	조례 제2074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 8. 30	조례 제240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 12. 20	조례 제2560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2. 8. 2	조례 제28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시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트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시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시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은 지역발전을 위해 공약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개정 2014. 8. 14, 2015. 4. 3, 2018. 8. 30, 2019. 12. 20>

1.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시장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공약이행 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장 취임 후 15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서식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에 건의·자문함으로써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평가단은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모집인원을 배정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7, 2022. 8. 2>

④ 단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

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7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방법)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시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약사항 변경) 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은 평가단의 자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시정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이상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7>

제14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30일 이상) 및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환류) 시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7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4 조례 제2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2015. 4. 3 조례 제207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괄부서는 미래전략실로 한다.

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㉕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미래전략실”을 “정책개발담당관”으로 한다.

㉖ 부터 ㉔ 까지 생략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56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정책개발담당관”을 “정책기획과”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22. 8. 2 조례 제2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약사업 추진실적 제출서식
(제9조 관련)

관리번호	공약사업명		신규
주관부서		협조부서	
담당	팀장 ○○○, ○○○ ☎111-2222	추진목표	심사결과

■ 사업개요



※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간략히 기재 (변경사항은 푸른색으로 작성)

■ 로드맵

(단위 : 백만원)

세부추진내용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이후
	%	%	%	%	%	-
총사업비(계)						
국비						
시비						
구비						

■ 추진실적

그간 주요 추진 실적	해당분기 추진실적
<p>※ 민선 5기, 해당분기 이전 추진실적 정리</p>	

■ **향후계획** (완료사업일 경우 사업성과)

■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 등**

- ※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부서의견 및 방침서에 제시된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애로사항 등

■ **자체 심사평가 결과 (○표기)**

- 완료(), 정상추진(), 계획변경(), 사업보류(), 사업취소(), 시기미도래()
- ※ 부진, 계획변경, 사업보류, 사업취소일 경우 사유를 요약 기재 후 ‘부진사업 내역 및 ’ 보완대책’, ‘사업계획변경통보서’와 사업보류·사업취소 방침서 사본 등 제출